

1. 개정이유

구조·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결과 및 예방접종력의 수집·활용 근거 신설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확립과 감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, 구급차·응급처치 기구 등의 세부 소독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소독 대상·상황별 적절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구조·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 및 예방접종력 관리 근거 신설
(안 제21조제1항, 제2항, 제3항 및 제4항)

1) 구조·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시행 이후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대원의 건강 상태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, 감염사고 발생 시 항체 보유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

2) 정기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의 수집·결과 활용 등을 위한 근거와 관련 서식 신설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향후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감염사고와의 정보 연계성으로 신속·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

나. 구급차 등의 소독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(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)

1) 현행 조항은 소독 주기가 “주 1회 이상”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소 의

무 이행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

- 2) 소독 대상·주기·방법 등 세부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별 소독 방법을 구체화하고 청결하게 유지·관리할 수 있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 제목 “(검진기록의 보관)”을 “(검진기록의 보관·결과 활용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1호 중 “감염성 질병·유해물질 등 접촉”을 “유해물질등 접촉 및 감염사고 발생관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구조·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「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」 제1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”를 “구조·구급대원의 공무원 연금 종료 시까지 소방관서에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1조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

- ① 소방청장등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·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에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소방청장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조·구급대원

의 예방접종 기록을 수집·관리할 수 있다.

③ 소방청장등은 정기건강검진 결과 및 예방접종 기록을 역학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호서식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구조·구급대원은 동의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⑤ 소방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자료를 해당 구조·구급대원의 건강 보호·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2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소방청장등은 감염예방을 위하여 119구급차, 응급처치 기구, 119감염관리실 등(이하 “119구급차등”이라 한다)을 청결하게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

② 119구급차 등은 주 1회 이상 소독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며, 소독 대상, 주기 및 방법 등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<u>검진기록의 보관</u>) <u><신 설></u>	제21조(<u>검진기록의 보관 · 결과 활용 등</u>) ① <u>소방청장등은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조 · 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 표에 작성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② <u>소방청장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조·구급대원의 예방접종 기록을 수집 · 관리할 수 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③ <u>소방청장등은 정기건강검진 결과 및 예방접종 기록을 역학 조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지 제13호서식 결과활용 동의서를 작성하도록 안내하고 그 동의서를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구조 · 구급대원은 동의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u>
소방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구조 · 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「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」 제17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.	④ ----- -- <u>구조 · 구급대원의 공무원 연금 종료 시까지 소방관서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제20조에 따른 <u>감염성 질병 ·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</u> 및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진료 기록부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제23조(구급차 등의 소독) <u>소방청장등은 주 1회 이상 구급차 및 응급처치기구 등을 소독하여야 한다.</u> <u><신 설></u>	1. ----- <u>유해물질등 접촉 및 감염사고 발생관리</u> ---- ----- ----- 2. (현행과 같음) 3. 제21조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 4. (현행 제3호와 같음) ⑤ <u>소방청장등은 제4항에 따른 자료를 해당 구조·구급대원의 건강 보호·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 제23조(구급차 등의 소독) ① <u>소방청장등은 감염예방을 위하여 119구급차, 응급처치 기구, 119 감염관리실 등(이하 “119구급차 등”이라 한다)을 청결하게 유지·관리하여야 한다.</u> ② <u>119구급차 등은 주 1회 이상 소독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며, 소독 대상, 주기 및 방법 등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</u>
--	---

구조·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표

주민등록번호		이 름		나 이	만 세	성 별	
주 소						연 락 처	
소 속				직 종			
최초임용일				현보직 임용일			

혈 액 검 사											
검사항목	백혈구 (10 ³ / μ L)	적혈구 (10 ⁴ / μ L)	혈색소 (g/dL)	헤마토크리트 (%)	혈소판 (10 ³ / μ L)	Neutrophil (%)	Lymphocyte (%)	Monocyte (%)	Eosinophil (%)	Basophil (%)	MCV (fL)
참고치	4.0~10.0	남420~630 여400~540	남13~16.5 여12~15.5	남39~52 여36~48	130~400	50~75	20~44	2~9	1~5	0~2	80~100
검사 결과											

소 변 검 사										간 기 능		당 뇨 병		
검사항목	단백	잠혈	당	빌리루빈	유로빌리노겐	케톤	비중	pH	아질산염	백혈구	AST	ALT	공복혈당 (mg/dL)	당화혈색소(%)
참고치	음성	음성	음성	음성	양성/음성	음성	1.003~1.030	4.5~8.0	음성	음성	40이하	35이하	100 미만	4.0~6.0
검사 결과														

감염성질환							
검사항목	HIV	C형간염	A형간염		B형간염		매독
	Anti-HIV	Anti-HCV	HAV-Ab IgM	HAV-Ab IgG	HBs-Ag	HBs-Ab	VDRL
참고치	음성	음성	음성	양성	음성	양성	음성
검사결과							

장 비 검 사				
검사항목	요추MRI	흉부 X선 검사	심전도검사	초음파검사
검사 결과				

검 진 소 견				사 후 관 리 조 치			
건강진단일자	.	.	.	건강진단기관		건강진단의사	(서명 또는 인)
수 검 자			(서명 또는 인)				

건강검진 등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

1. 본 동의서는 「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」 제23조(구조·구급대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대책등 수립·시행),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(감염방지대책) 및 제27조(건강관리대책)에 따라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건강검진 등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서입니다.
2. 귀하의 개인정보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등에 따라 비밀 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,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.
3. 수검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이 경우는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○ 정보제공 범위

- 개인식별 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전화번호, 소속 소방서
- 건강검진 정보 : 건강검진 결과, 문진 자료 및 예방접종 이력

○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: 공무원 연금 종료 시까지

○ 정보 활용기관 : 소방청(소속기관 포함), 소방관서(소방본부 및 소방서)

본인은 소방관서장으로부터 건강검진 정보 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소방청 및 소방관서가 사후관리를 위해 상기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수 검 자 성 명 (서명 또는 인)

주민등록번호

(법정대리인 성명)

(서명 또는 인)

백상지(120g/㎡) 또는 백상지(80g/㎡)